

IBK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퇴직연금 교육자료 -확정급여형[DB]-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에게 연 1회 이상 제공해 드리는 교육 자료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의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파트너로
저희 IBK기업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IBK기업은행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최적의 퇴직연금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님의 소중한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용함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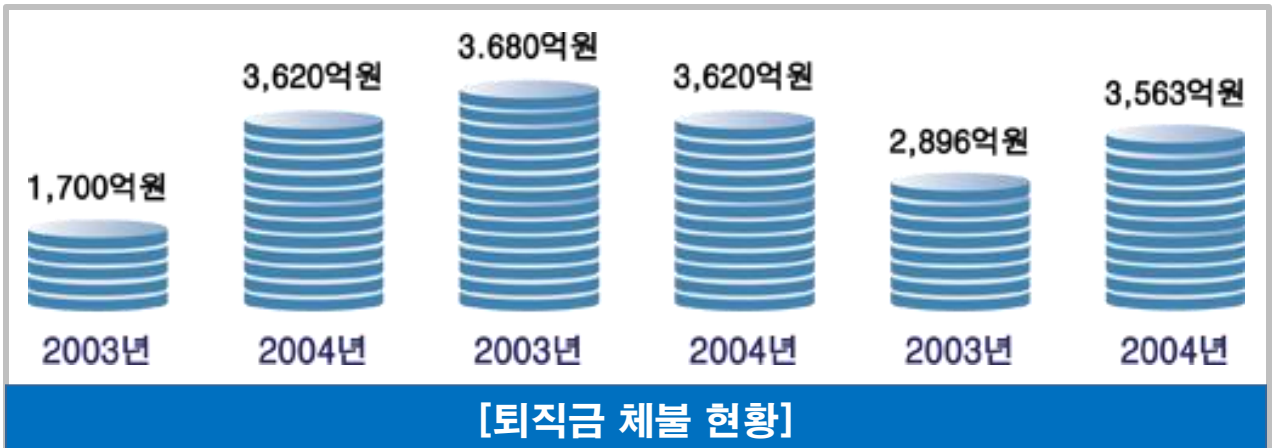


1. 퇴직금제도

가. 퇴직금제도의 개요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961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퇴직금제도의 한계



노동시장의 변화	• 근로자들의 잦은 직장이동(평균근속기간 6년) •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후자금기능상실	• 근속년수의 단축 및 연봉제 확산과 잦은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규모 축소, 생활자금으로의 소진
수급권 보장 취약	•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사외예치 미흡
적용대상의 형평성미흡	• 5인 미만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 근속자의 적용배제

2. 퇴직연금 제도

가.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이 정산되어 퇴직금 사용 용도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충당 등으로 사용되었고 퇴직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예치 및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안정적으로 퇴직급여(일시금, 연금)를 받아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나. 제도 도입의 배경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대응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믿을 만한 IBK기업은행에 퇴직금을 맡겨놓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다.

· 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가 할 수도(DB)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도(DC) 있다.

· 변화된 자산관리 환경에 대응

최근 포트폴리오 기법 등을 동원하여 채권, 주식, 선물, 각종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재원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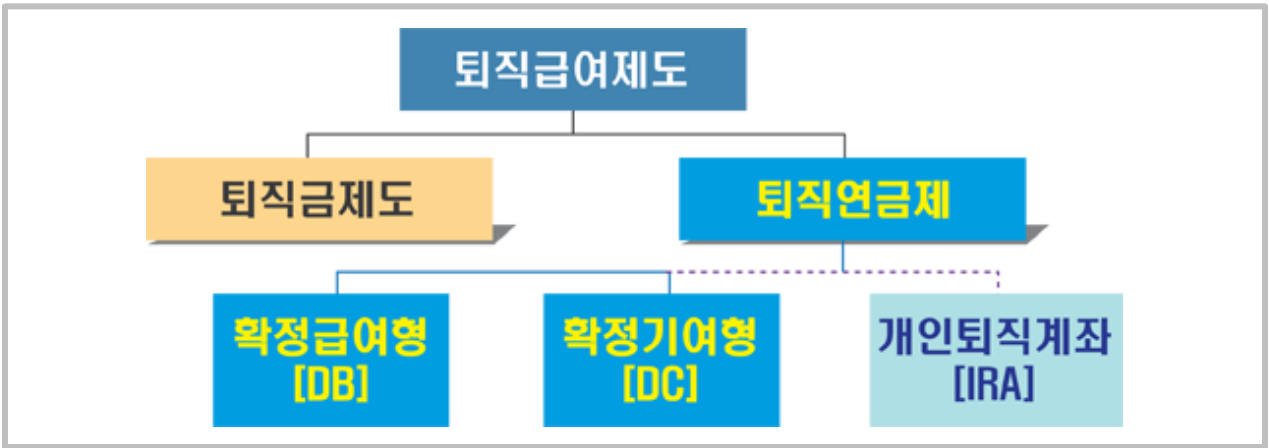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개인퇴직계좌(IRA)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은퇴시점까지 퇴직급여를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연금의 3단계 노후소득 보장제도

선진국에서 퇴직연금은 공적연금(1층 노후소득 보장 장치)을 보완하는 노후소득 보장장치(2층)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국가가 적정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하여 그 발전을 도모하는 준 공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 퇴직연금제도의 구성



• 확정급여형(DB)제도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 확정기여형(DC)제도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 개인퇴직계좌(IRA)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또한 10인 미만 기업이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도입으로 인정.

라. 제도의 가입절차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제 신고처리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신고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입증하기 위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동의서 첨부는 생략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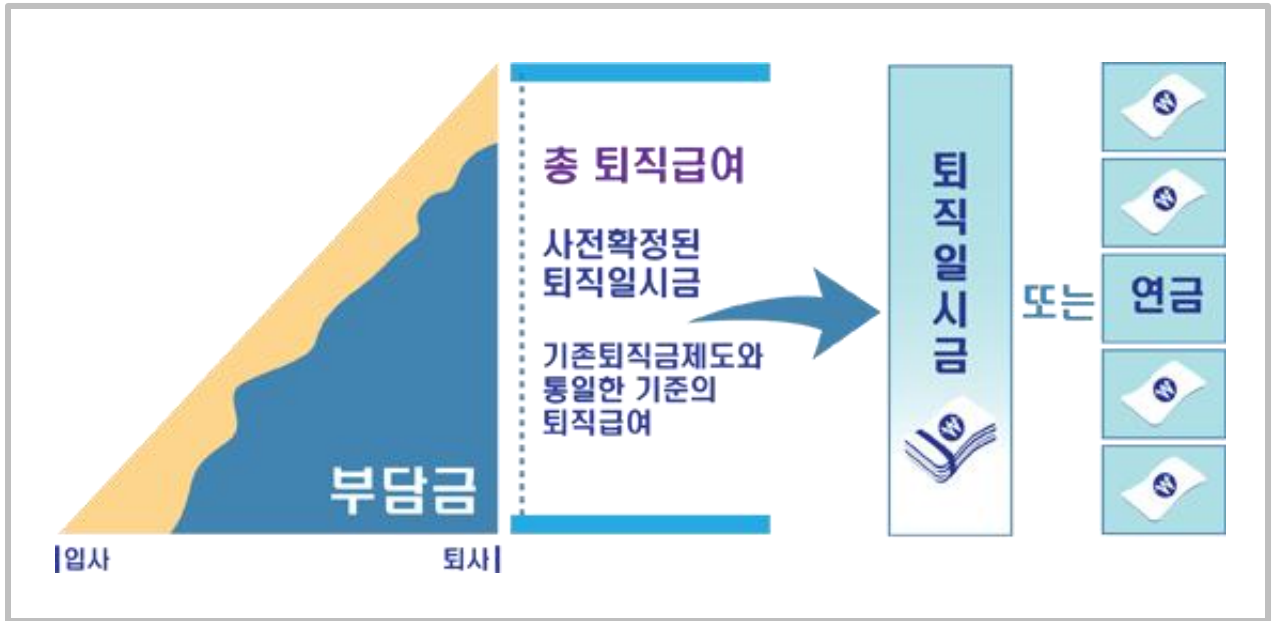
• 퇴직연금규약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란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



1. 제도의 개요 및 구조

가. 제도 개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나. 기본 구조

- 퇴직급여 :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하여 규약에 명시한다.
- 적립금 : 산출된 예상추계금액의 60%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다.
- 적립금 운용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책임 부담
적립금은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변동
- 퇴직급여 지급 :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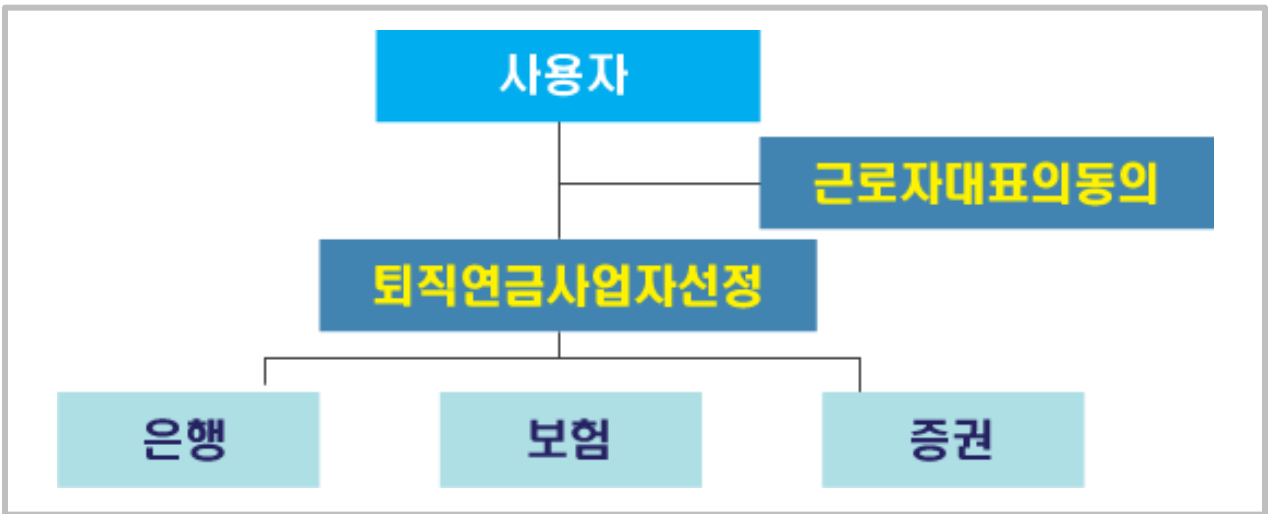
다. 운용 구조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근무기간의 적립금은 제도적용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과거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퇴직금 예상추계액의 60% 이상을 일시납 또는 일정기간을 두고 상각할 수 있다.

- 과거 특정기간부터 적용할 경우 이전 적립금은 기존 퇴직금제도로 사내 유보하고 특정시점부터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소급할 수 있다.
- 도입시점부터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하고 이전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해 사내 유보한다.
-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은 퇴직금 예상추계액의 60% 이상이며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을 선택하여 주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
-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달리 근로자가퇴직을 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통해 55세 이후에 5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 제도의 운영

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



나. 가입자 대상기준





1. 전직과 이직의 정의

- 전직 : 직업이나 직무를 바꾸어 옮기는 것을 의미
- 이직 :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 (이직은 직장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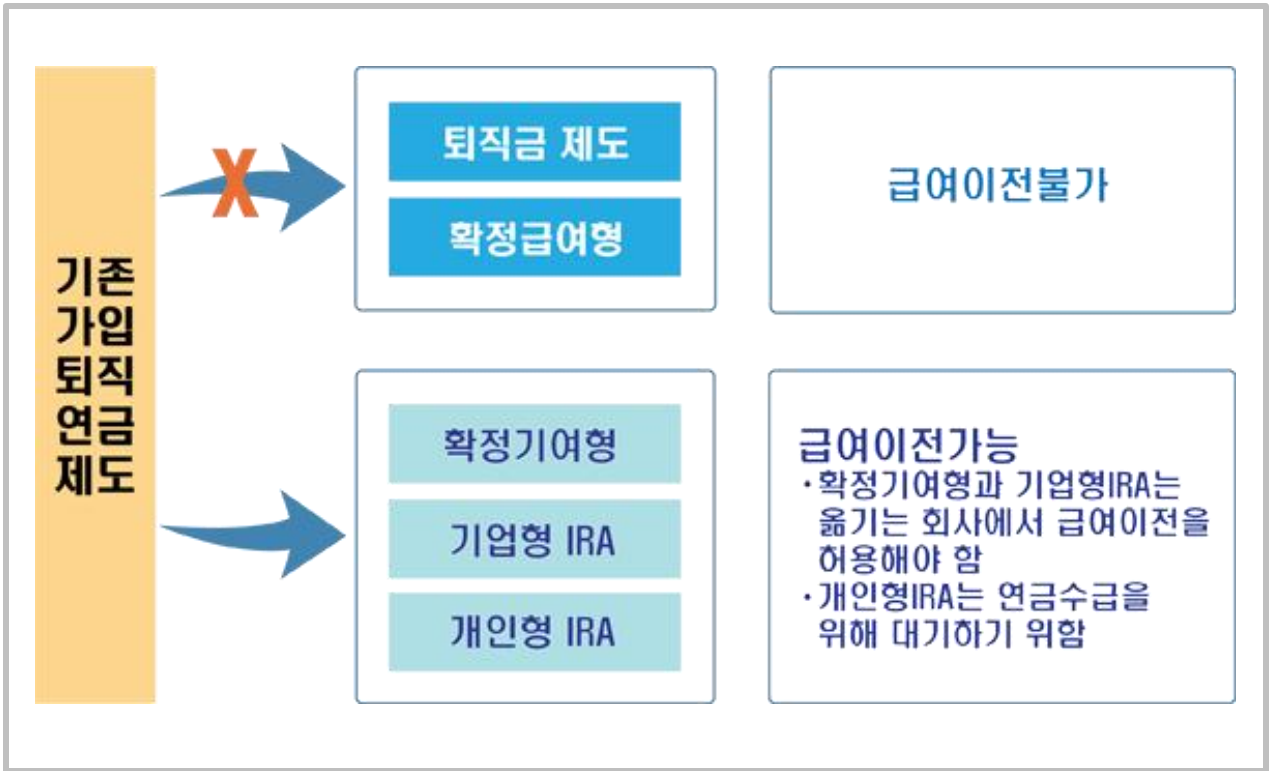
2. 퇴직연금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선택

- 퇴직시점에 가입자는 일시금 혹은 연금의 수급을 선택하게 된다.
-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고 일시금을 받으면 되고 연금의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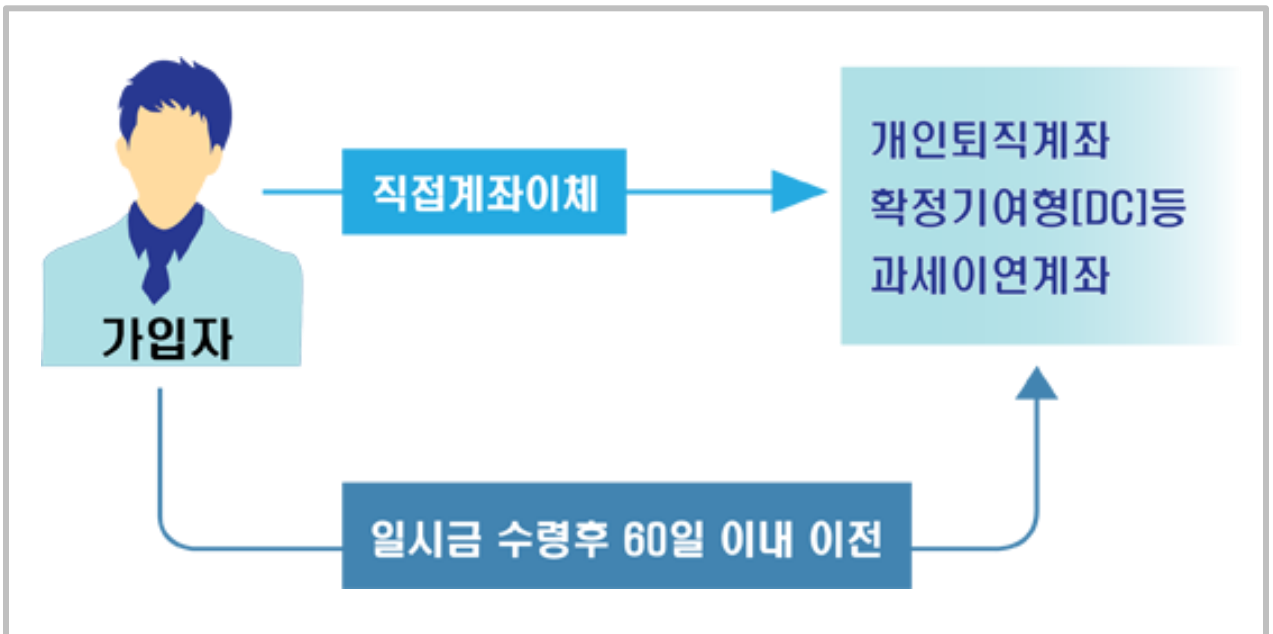
3. 전직·이직 시 급여이전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에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선택했을 때 (기존 퇴직연금플랜에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퇴직계좌 등 다른 플랜으로 급여를 이전하여 연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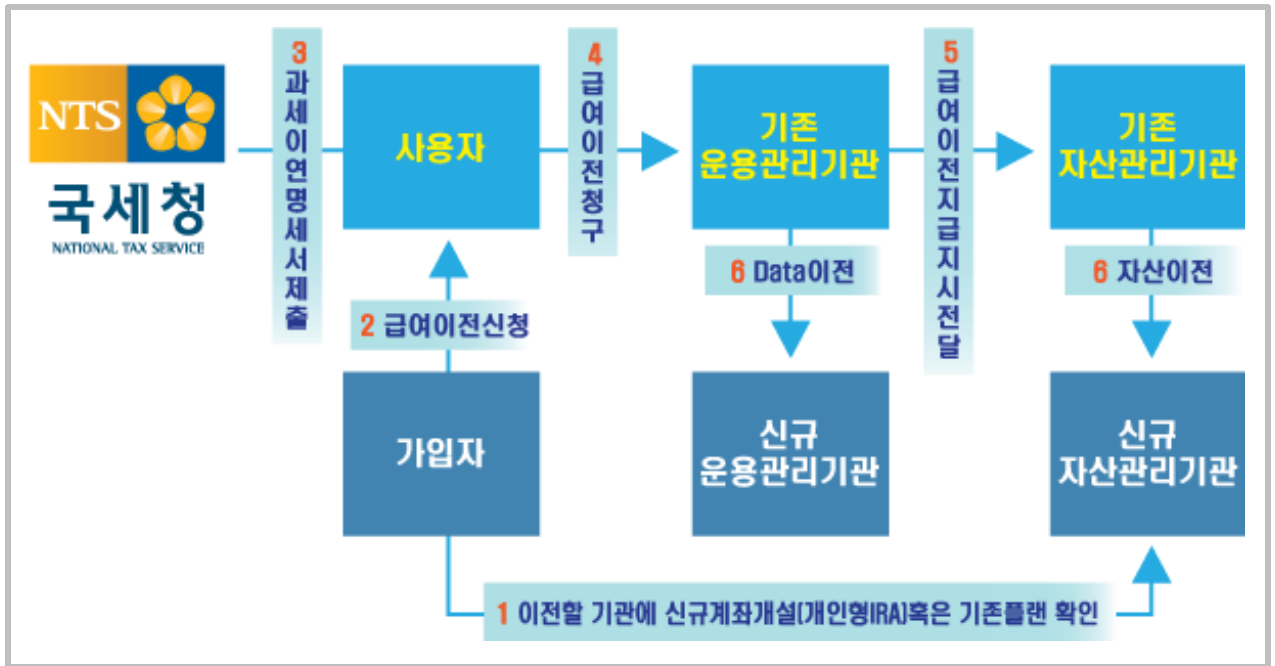


4. 전직 · 이직 시 급여 이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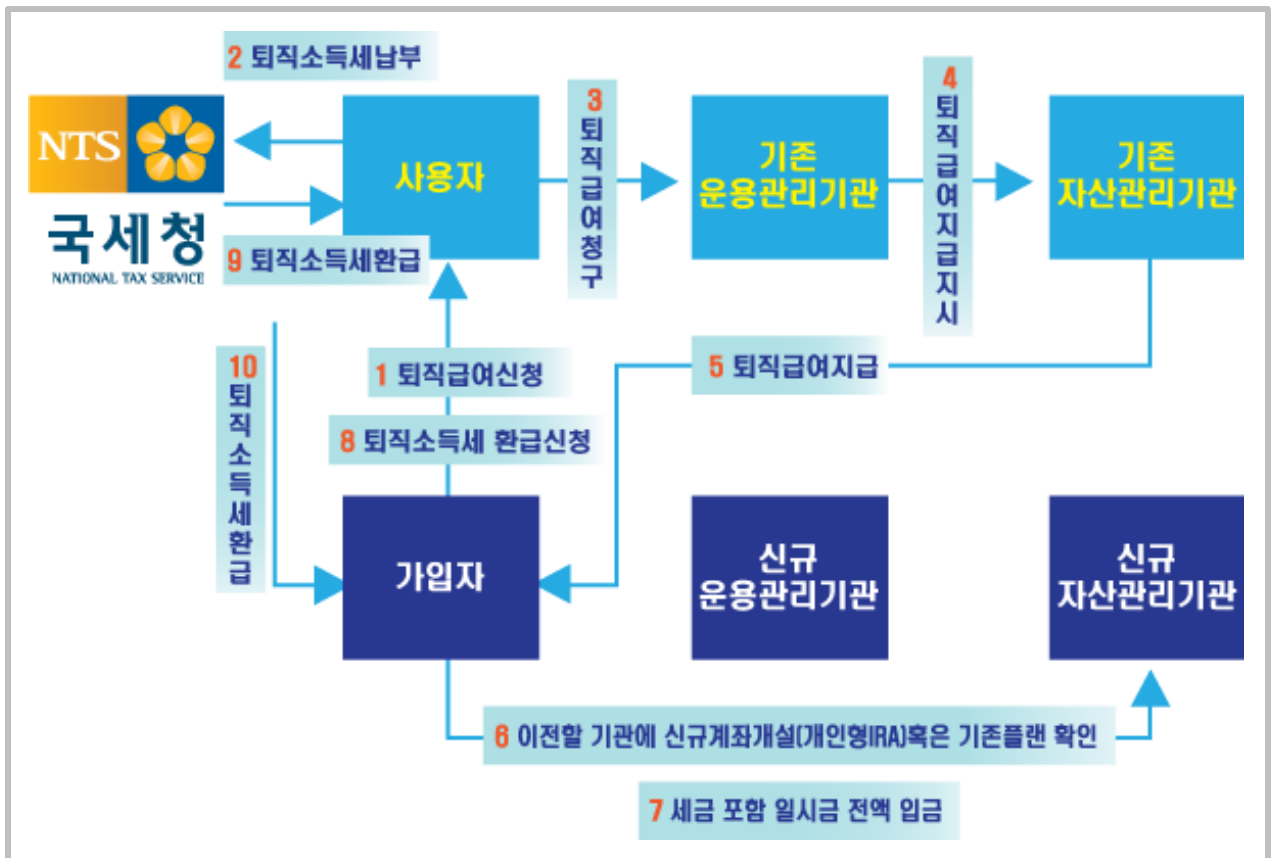
급여이전은 퇴직 시 개인퇴직계좌나 전직할 회사의 확정기여형 등 과세이연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법과 일시금을 먼저 수령하고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을 하고 급여이전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가. 직접 계좌 이체를 통한 급여이전 방법



나. 퇴직 후 60일 이내 급여이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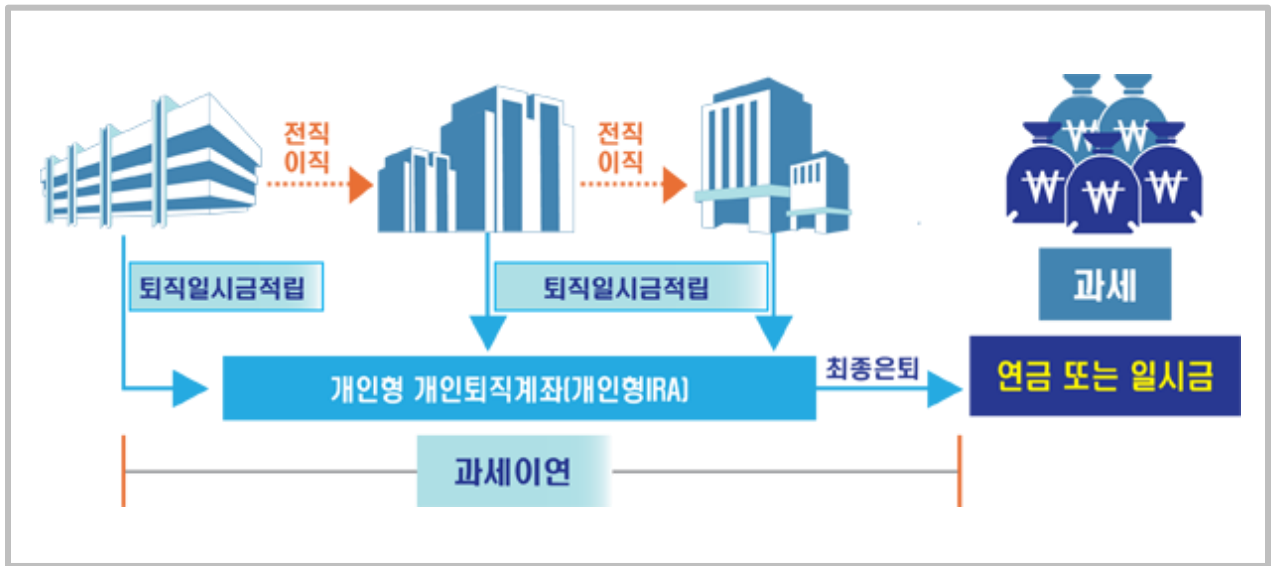




1. 퇴직연금의 통산과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의 통산을 위해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퇴직계좌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경우라든지 전직·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퇴직계좌에 대해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2. 개인 퇴직계좌의 개념



3. 개인퇴직계좌의 요건

- 퇴직 일시금의 8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퇴직금 외 가입자 추가 입금은 불가함
- 중간 정산 시
 - |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날부터 60일 이내 납부
 - |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
- 퇴직 시: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초일불산입)

4.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시 효과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대기기간의 과세가 이연 되는 세제혜택이 있음



5. 급여 과세체계

가. 일시금 수급 시 퇴직소득 과세 예시

나 퇴직씨가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근속기간 : 686일
월 급여 :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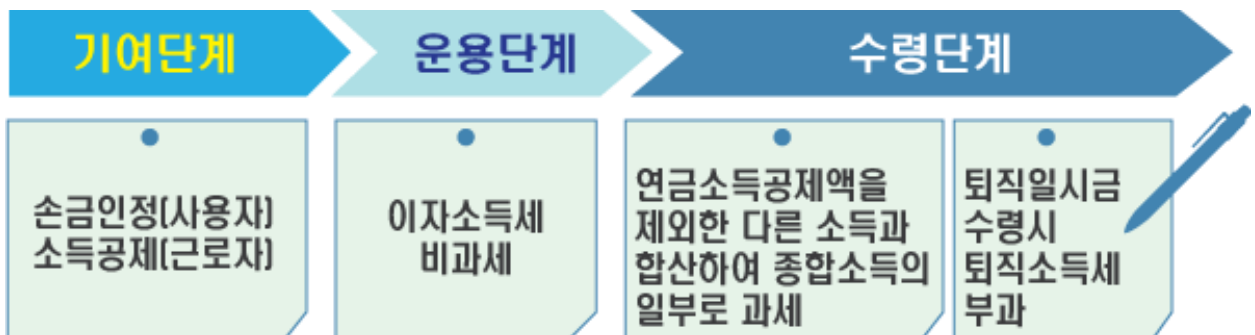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2005.9.21 ~ 2005.12.20 (90일)
총 재직일 수	1년 321일 (686일)
근속년수	2년 (1년 + 1일도 2년으로 본다)
최근 3개월 급여	3,000,000 (₩1,000,000 × 3개월)
최근 3개월 상여금	493,150 (₩1,000,000 × 2/365 × 90일)
최근 3개월 급. 상여(₩ 3,493,150) / 최근 3개월 일수(90일) = 평균임금(₩ 38,810)	
평균임금(₩ 38,810) × 총 재직일수(686일) × 30일 / 365 = 퇴직금(₩ 2,188,250)	

과 세 내 역		산 출 산 식	
과 세 소 득 액		2,188,250	퇴직급여(수당)액 과세소득
퇴 직 소 득 공 제	소득공제(A)	984,712	과세소득액의 45%
	근속년수별공제	600,000	5년 이하
		0	5-10년
		0	10-20년
		0	20년 초과
	근속년수별공제계(B)	600,000	(근속년수별 초과 재직연수)
계(A+B)		1,584,712	소득공제(A)+근속연수공제(B)
과 세 표 준		603,538	과세소득액-퇴직소득공제액
연평균 과세표준		301,769	과세표준/세법상 근속연수
연평균 산출 세액	1천200만원 이하	18,106	1천2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이하	0	과세표준의 6%
	8천800만원 이하	0	4천6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0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계	18,106	582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24%
산 출 세 액		36,212	8천800만원 초과
세 액 공 제		0	1,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결 정 세 액		36,212	연평균과세표준액 기준 세율 적용+누진세액
기 납 부 세 액		0	연평균산출세액*세법상 근속연수
소 득 세		36,210	2005년 귀속 퇴직소득부터 적용안함
주 민 세		3,620	산출세액-세액공제
납 부 세 액		39,830	종전근무지의 "차감원천징수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소득세액*10%(소수점 이하 절사)
			소득세+주민세

소득대비 1.82% 과세

나. 연금 수급 시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 시와 적립금 운용 시에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퇴직소득세는 이연되는 혜택이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만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과세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월 200만원씩 1년에 2,400만원 연금을 수령하는 K씨의 **연금소득세** (다른 소득은 없음)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계산〉

①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2,400\text{만원} - \{630\text{만원} + (2,400\text{만원} - 1,400\text{만원}) \times 10\%\}$
 $= 2,400\text{만원} - 730\text{만원}$
 $= 1,670\text{만원}$

②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기본공제: 200만원(2인 가구), 표준공제: 60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 200만원
 (그외 기타공제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1,670\text{만원} - 260\text{만원} = 1,410\text{만원}$

③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1,410\text{만원} : 96\text{만원} + (210\text{만원} \times 17\%) = 1,317,000.$

④ 산출세액 - 기 납부세액 = 추가징수 또는 환급
 $1,317,000 - (2,400\text{만원} \times 5\%) = 117,000\text{원}$

K씨는 추가로 117,000원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총 연금액의 **0.49%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5세가 넘게 되면 경로우대자 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므로 223,000원을 환급 받으므로 세금이 없게 됩니다

다.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기타 천재·사변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인출 시 중도인출금액에 대해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연금수령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퇴직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에서 본인 불입액 중 소득공제 초과 분(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연금수령액 × $\left[1 - \frac{\text{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right]$



1.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가.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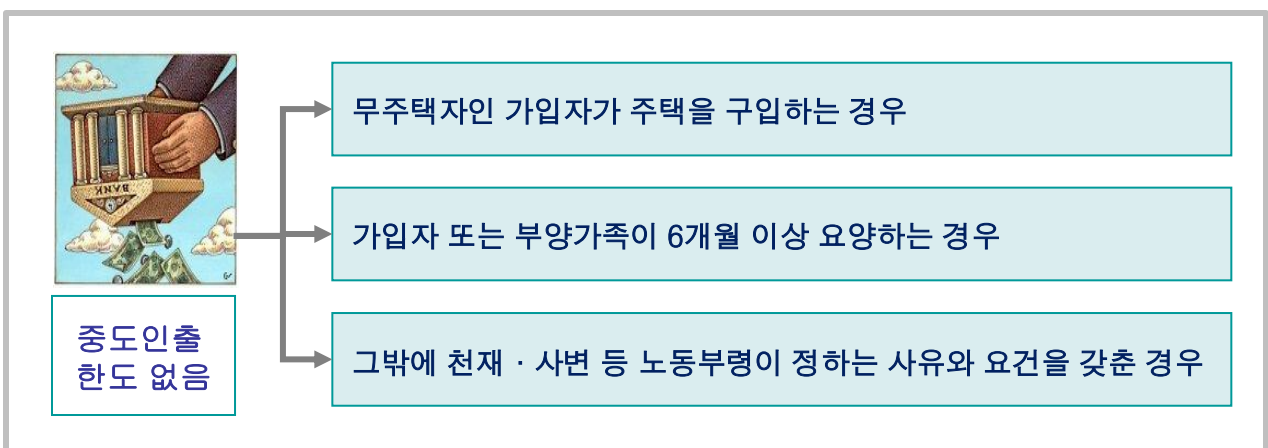
급여종류	형태	수급요건
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 IRA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개인형 IRA	•55세 이상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나. 급여의 지급 절차

-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가입자로부터 청구를 받아 확인한 후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급여의 지급을 지시한다. 이 경우 가입자의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게 급여의 지급지시를 전달한다.
- 자산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자산을 매각한 후 가입자의 통장에 급여를 입금 처리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소멸 등 사용자를 통한 급여청구가 곤란한 경우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급여지급을 직접 청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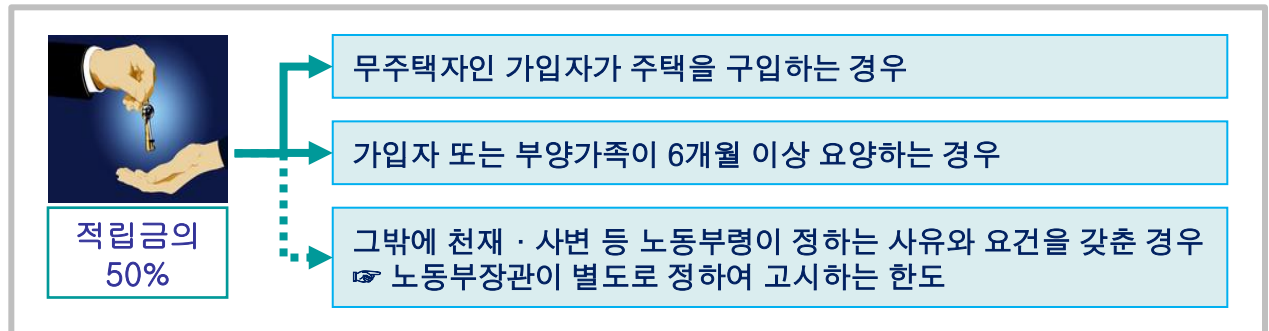
2. 중도인출

확정급여형(DB)과 달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3.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별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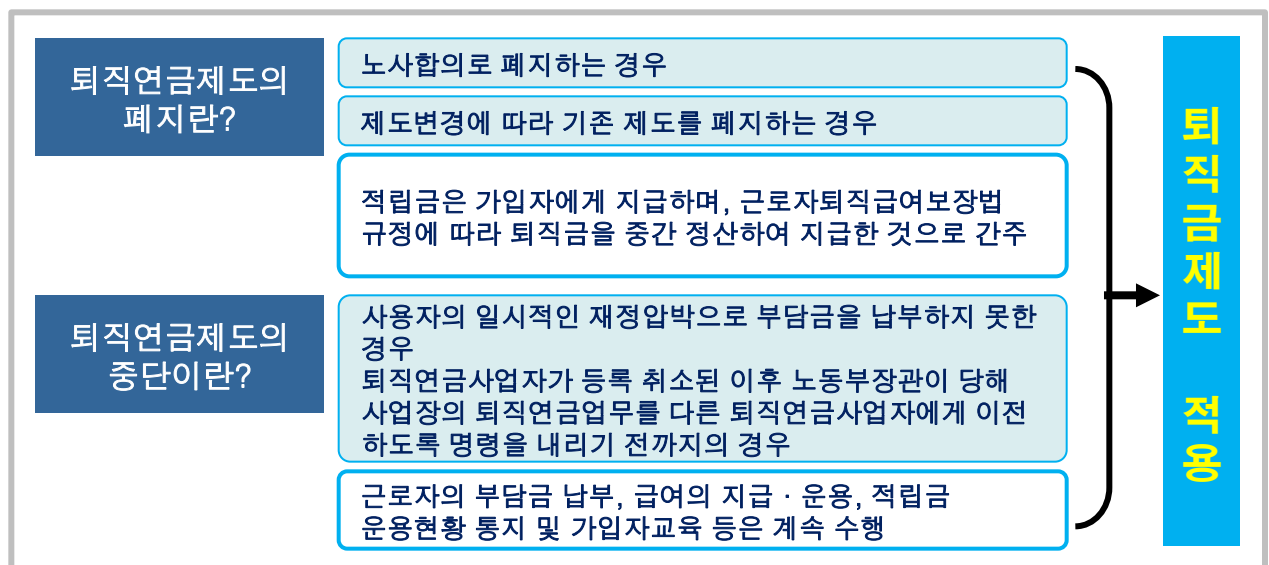


4. 계약이전

계약이전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 변경 :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퇴직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 계약이전 신청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5. 퇴직연금 폐지·중단 시의 처리





1. 투자

가. 투자의 개념

투자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대상은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고 그 외 부동산이나 토지 등 기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모든 것들이 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투자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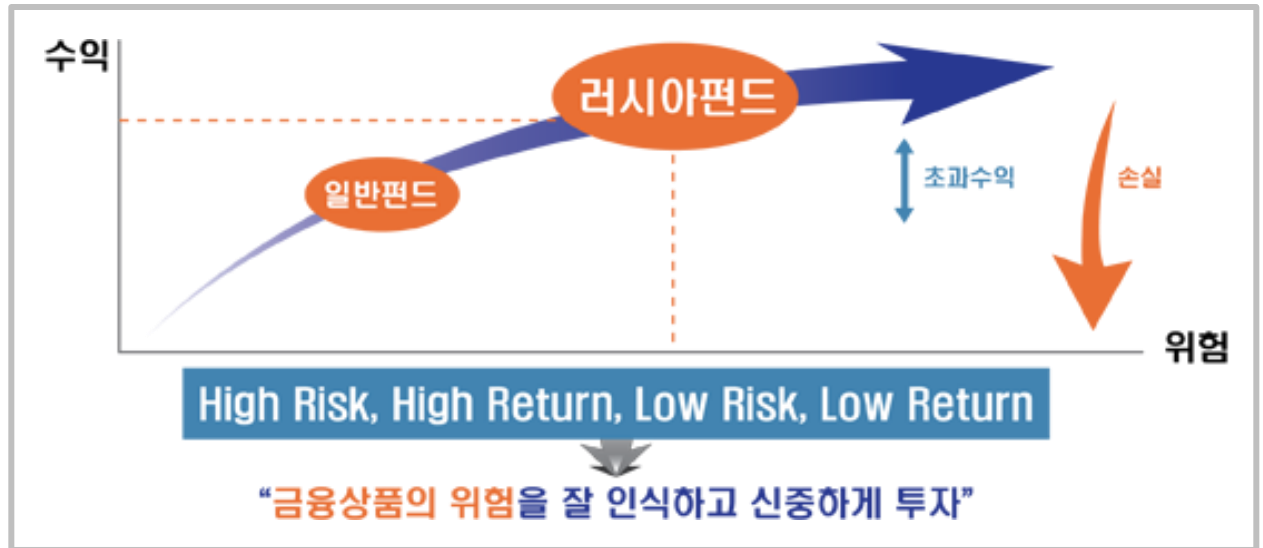
2. 위험과 수익

가. 위험과 수익의 개념



나. 위험과 수익의 관계

1997년 국내에서 러시아투자펀드가 판매되었는데 1998년 러시아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고 투자자들은 원금회수마저 불투명하게 되었다. 러시아펀드의 예시와 같이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는 그만큼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금융상품의 위험을 잘 인식하고 항상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다. 위험의 종류

환율위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외화표시상품은 원화로 재계산하여 자산가치를 파악하므로 만약 외국통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해외투자자산의 투자수익이 감소될 수 있음
금리변동의 위험	금리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채권가격과 이자율(금리)은 정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함
가격변동 위험	주식,채권,투신 등 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이는 기업실적 및 경제상황에 따라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강세장과 약세장을 순환하므로 발생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상품 등을 산 후에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는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하여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 분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채권, 주식 등을 발행하는 국가나 기업의 신용등급 저하 또는 도산에 의해 투자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위험
국가위험	국가위험은 개발도상국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도가 높은 정치적 사건, 재정상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를 악화시키고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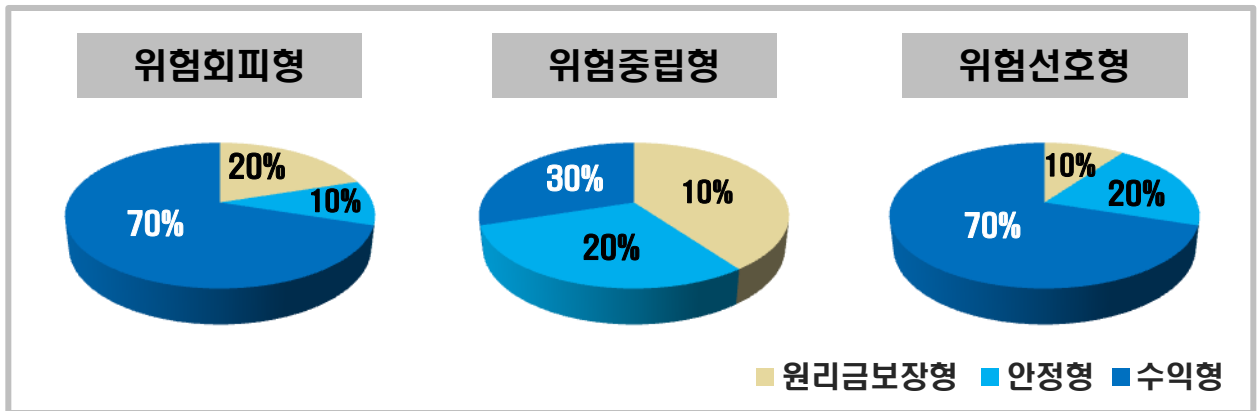
3. 자산배분

가. 자산배분 및 자산구성비율의 의미

포트폴리오란?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곳에 투자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 자산배분 :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투자과정
- 자산구성비율 :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위험회피형, 위험중립형, 위험선호형으로 구분



나. 투자성향과 자산구성의 관계



4. 자산운용 전략

가. 자산운용전략의 구분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구성이 자산운용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자산운용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시장 요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 장기투자 • 연령에 따른 자산운용 • 위험선호도에 따른 자산운용	• 분산투자 • 시장사이클에 따른 자산운용 •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자산운용

나.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 장기 투자

- 장기투자의 개념 : 단기투자의 반대개념으로 자산운용전략을 세우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투자방법 (금융상품의 장기보유를 뜻하는 것임 아님)
- 필요성 :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하므로 조급해지지 않고 안정적이며 자신이 세운 자산운용 전략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훨씬 합리적임
→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함

■ 연령에 따른 자산 운용

- 퇴직시점이 많이 남은 투자자 : 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고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 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 : 저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운용

- 위험 회피형 성향 : 저위험투자를 선호
- 위험 중립형 성향 : 중간 정도의 위험투자를 선호
- 위험선호형 : 고위험투자를 선호

다. 시장 요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 분산투자

- 분산투자의 개념 :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대상별, 종목별, 지역별, 시기별로 분산하여 집중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을 줄이는 투자방법(무조건 나눠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필요성 : 수익을 극대화 시키기보다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안전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음

■ 시장 사이클에 따른 자산운용

- 경기주기와 마찬가지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호황과 불황을 반복함
- 현명한 투자자는 약세장에서 빠져 나오고 강세장에 투자하나 전문가조차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일반 투자자가 시장사이클의 변동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적립식 투자임
- 적립식 투자 : 정기적(매달, 매반기 등)으로 동일한 자산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여 투자결과가 시장변동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자산운용방식

■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자산운용

- 어떤 투자에서도 수익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있음
- 대가 없는 수익은 바랄 수 없음

5. 금융 상품의 종류



가. 원리금보장상품

- 상품 종류 : IBK 퇴직연금정기예금 6개월, 1년, 3년, 5년제
- 저축 방법 : 퇴직금 적립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입금
- 이자 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계약기간 : 6개월, 1년, 3년, 5년 만기
- 재예치 : 만기 시 별도의 해지 신청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함 금액을 당초 계약기간과 동일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 약정이율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재예치일이 금융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되며, 재예치일의 이율을 적용

나. 실적배당형 상품

확정급여형(DB) 상품					
운용사	펀드명	펀드유형	위험등급	투자비율	
				주식	채권
IBK 자산운용	IBK 연금플랜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형	4등급(저위험)	0%	100%
	IBK 연금플랜 밸런스 3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형	3등급(중위험)	30%미만	70%이상
	IBK 연금플랜 밸런스 인덱스 3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형	3등급(중위험)	30%미만	70%이상
	IBK 연금플랜 밸런스 5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형	2등급(고위험)	50%미만	50%이상
	IBK 연금플랜 밸런스 인덱스 50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형	2등급(고위험)	50%미만	50%이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 퇴직플랜 G증권 자투자신탁 1호	채권혼합형	3등급(중위험)	40%미만	60%이상
	미래에셋 퇴직플랜 G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혼합형	2등급(고위험)	50%미만	50%이상
	미래에셋 퇴직플랜 G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형	1등급(초고위험)	70%미만	30%미만
한국투자 신탁운용	한국투자 퇴직연금증권 자투자신탁 1호	채권형	4등급(저위험)	0%	100%
	한국투자 퇴직연금밸류증권 자투자신탁 2호	채권혼합형	3등급(중위험)	40%미만	60%이상
삼성투자 신탁운용	삼성 퇴직연금N재팬 40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채권혼합형	3등급(중위험)	40%미만	60%이상
	삼성 퇴직연금코리아대표 40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채권혼합형	3등급(중위험)	40%미만	60%이상
ING 자산운용	ING 아시아퍼시픽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형	3등급(중위험)	40%미만	60%이상
	ING 유로배당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형	3등급(중위험)	40%미만	60%이상
동부 자산운용	동부 The Classic 퇴직연금 10증권 자투자신탁	채권혼합형	3등급(중위험)	10%미만	90%이상

6. 개인퇴직계좌 선택 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개인퇴직계좌 선택 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상품과 동일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추가규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추가적인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보완장치 차원

-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이라 함은 주식 및 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는 가입자는 위험자산에는 간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 ②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운용방법 별로 100분의 40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

원리금보장상품인 정기 예·적금의 경우 상품선정 시점의 이자율이 확정적인 것이나, 수익증권의 경우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8.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가.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본원칙

-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생활재원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
(자산운용의 전략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지를 결정)
- 이해가 쉽고 변경이 용이한 운용방법을 선택
- 너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피함
- 가능한 한 다양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위험을 분산
- 전체 자산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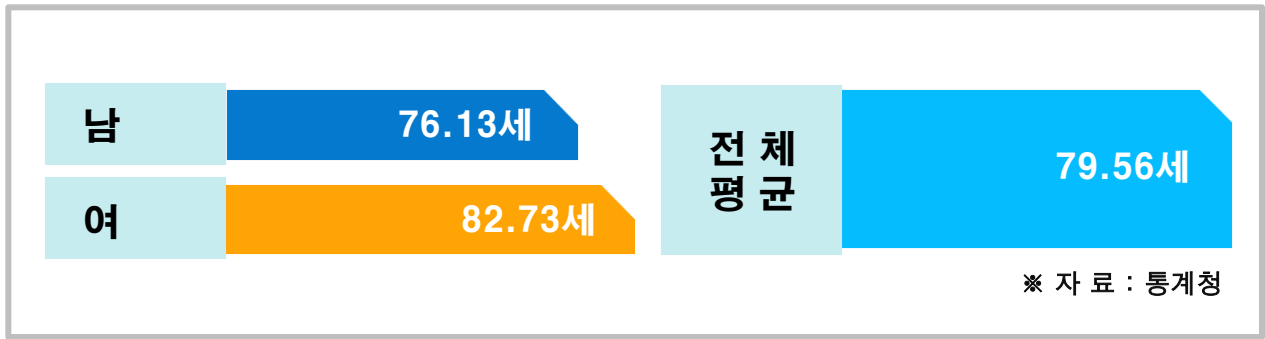
나. 자산운용의 단계





1. 배경 및 중요성

가. 우리나라 2007 평균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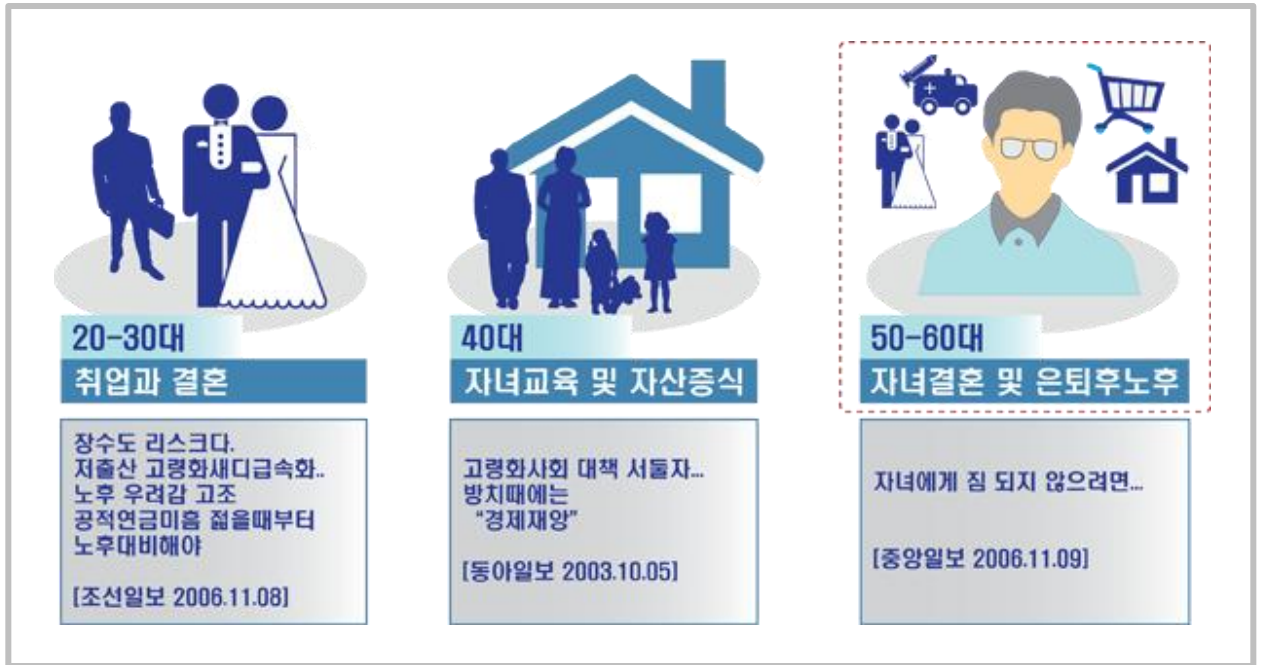
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름

65세이상 인구비중	도달년도			소요기간(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고령사회	14%—20% 초고령사회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스웨덴	1867	1972	2011	85	39

※ 자 료 : 신기섭, 홍원구, "연금시장 경쟁우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007.4, p.3

다. 연령대별 생애설계 고려사항

삶에 있어서 각 연령대별로 중요한 일들이 있다. 20대 중반부터 30대에는 취업과 결혼이 가장 큰 삶의 이슈가 될 것이고, 40대 들어서는 자녀교육과 자산증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50대와 60대에는 자녀의 결혼과 은퇴 후 노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생애에 걸쳐 계획을 세우는 생애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라. 배경 및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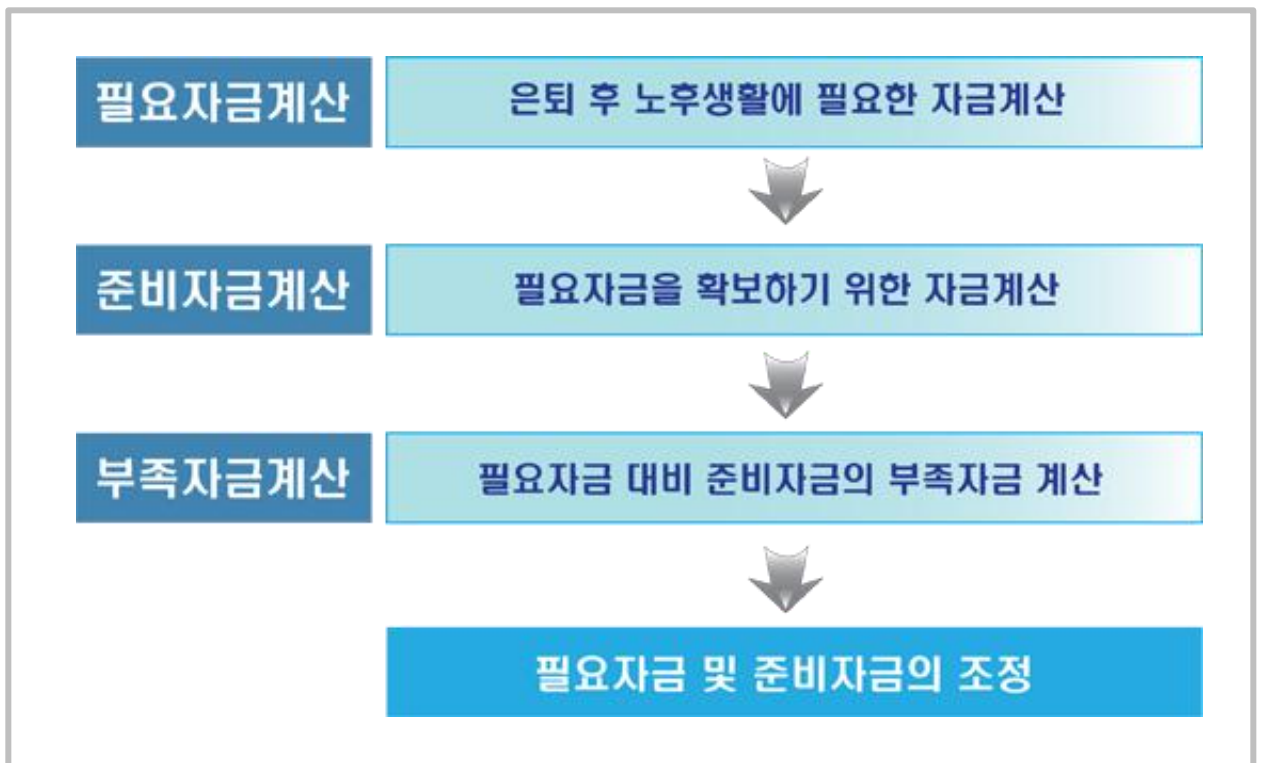
- 인구고령화 가속 :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름.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 진입
- 평균수명 증가 : 은퇴 후 노후비용 증가
- 출산율 저하 : 노동인구 감소, 노인 1명 당 부양 자 수 감소
- 고용개념 변화 : 평생고용인식 약화



2. 노후 설계 시 고려사항

	가족사항	부양해야 할 가족사항
	재무사항	현재의 보유자산 및 투자자산을 파악
	필요자금	은퇴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파악
	준비자금	보유자산 및 투자자산을 운용,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부족자금	필요자금-준비자금

3. 노후설계방법



4. 사례를 통한 노후설계 분석

가. 기본가정 및 노후생활 예상치

■ 기본가정

성 명	관 계	연 령	현재연봉	예상퇴직연령	예상수명
나기은	본 인	30세	3,000만원	60세	75세
나연금	나기은의 처	28세	2,000만원	45세	84세

■ 노후생활 예상치

기본생활비	여가생활비	의료비	사후정리자금
연 2,400만원 (월 200만원)	연 500만원	연 300만원	각각 1,500만원

나. 은퇴시점의 노후자금 분석

■ 노후 필요자금 분석

- 노후 기간 : 24년
(부부 중 은퇴가 늦은 사람의 은퇴시점부터 부부 중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의 사망시점까지)
- 은퇴시점의 노후 필요자금 : 154,321만원

	기본생활비	기타생활비 (여가생활비+의료비)	사후정리자금	합계
필요자금	111,213만원	37,071만원	6,037만원	154,321만원
구 성 비	72.1%	24.0%	3.95	100.0%

- 은퇴시점 필요자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노후기간의 필요자금을 은퇴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물가 상승률은 3.0%, 은퇴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수익률은 4.0% 적용

■ 노후 준비자금 분석

- 노후 기간 : 30년
(현재부터 부부 은퇴가 늦은 사람의 은퇴시점까지)
- 은퇴시점의 노후 준비자금 : 134,638만원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퇴직금	합계
준비자금	39,708만원	50,877만원	2,250만원	27,397만원	14,406만원	134,638만원
구 성 비	29%	38%	2%	20%	11%	100%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
- 국민연금액 계산은 연금수령기간의 예상 연금수령금액 합계를 은퇴시점의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 퇴직연금운용수익률 5.0%, 연금수령 수익률 4.0%, 거치형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4.5%, 적립형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5.0% 적용
- 준비자금은 이자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 금액

■ 노후 부족자금 분석

- 은퇴시점의 노후 부족자금 : 19,683만원
- 현재 준비상황으로 볼 때 필요자금의 약 87.2% 확보가 예상되며, 노후대비가 미흡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함

필요자금 합계	준비자금 합계	부족자금	노후설계 목표달성률
154,321만원	134,638만원	19,683만원	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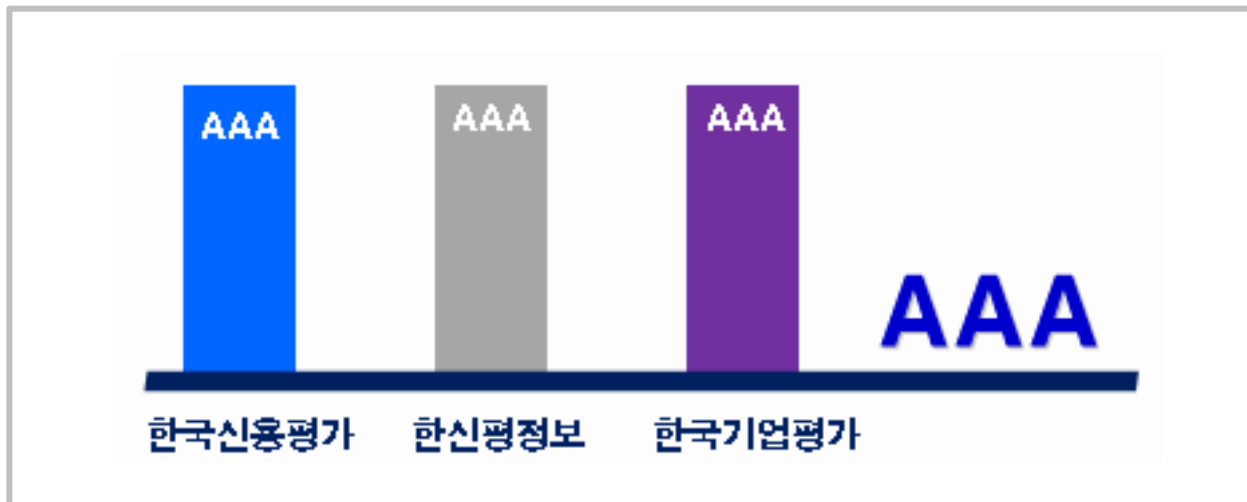
- 노후 준비율 = 노후 준비자금 합계 ÷ 노후 필요자금 합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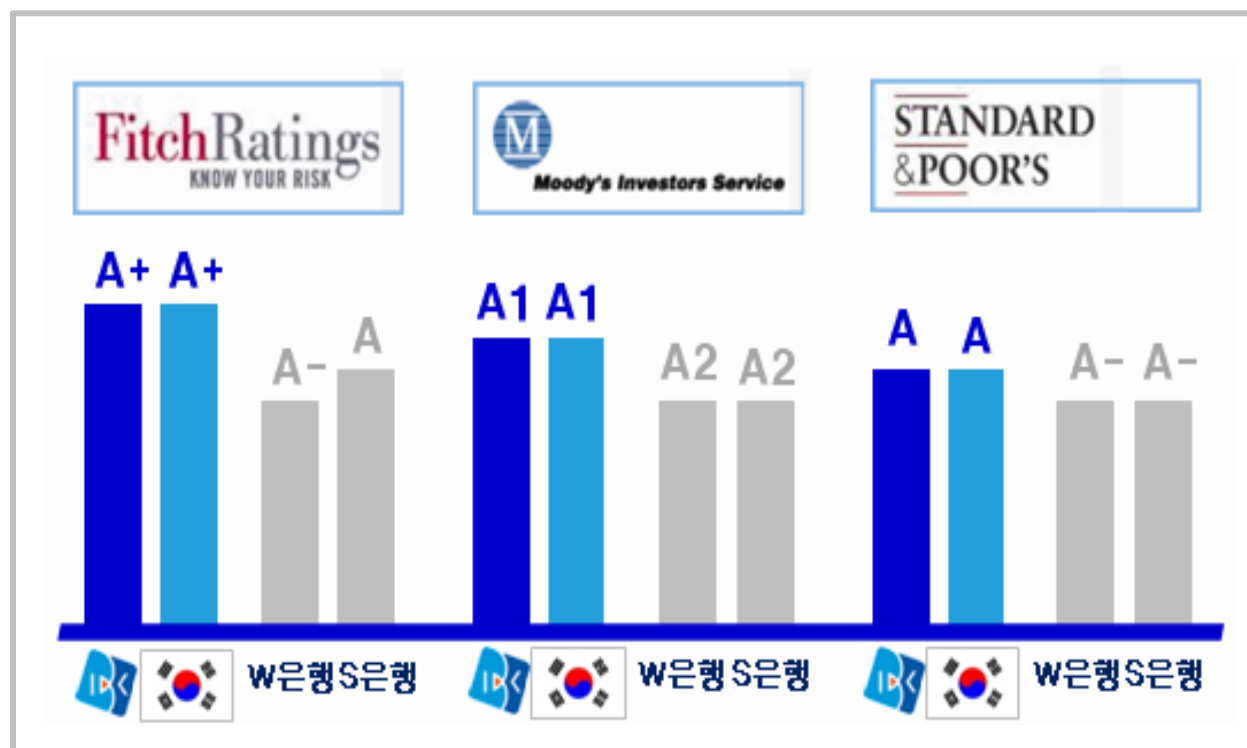
1. IBK기업은행의 강점

가. 안전한 국책은행

■ 당행 국내 신용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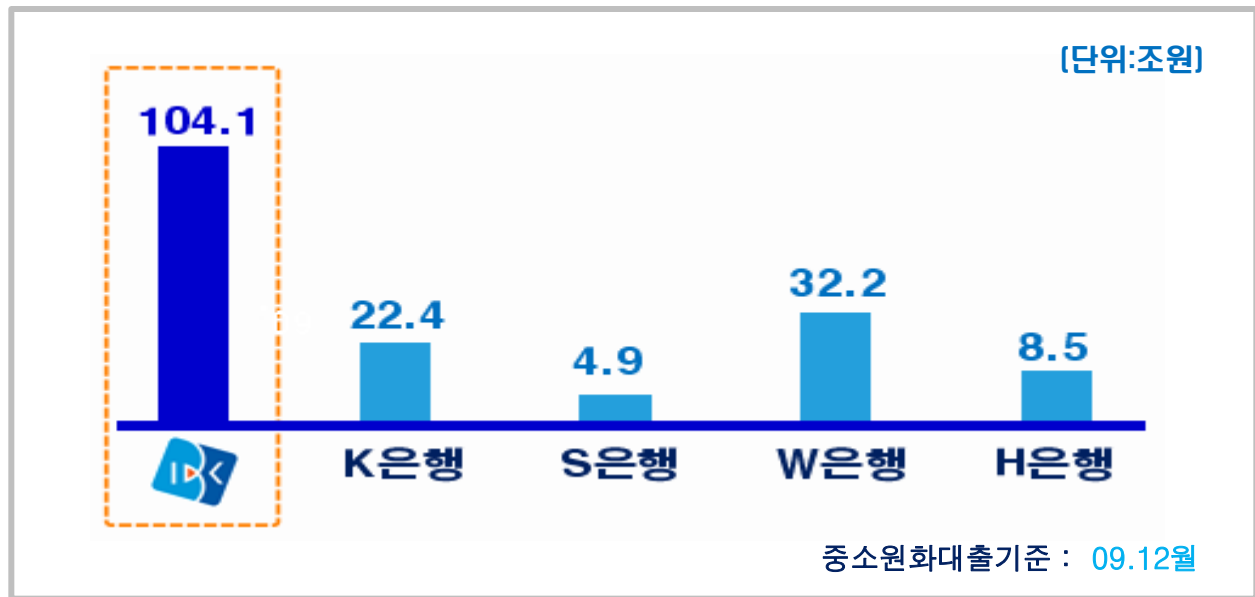


■ 당행 국외 신용등급



나. 든든한 IBK기업은행

- 2009년 전체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의 57.8%를 IBK 기업은행이 지원함
- 은행권 중기대출 순증액 18조원 중 10.4조원에 해당



다. 편리한 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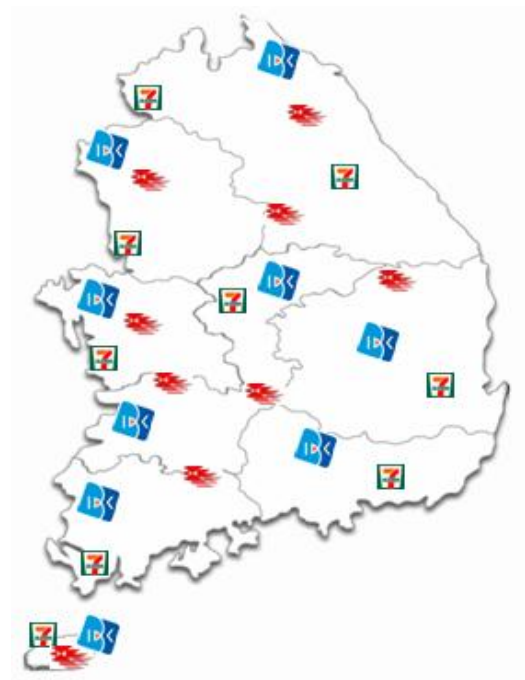
영업점

- 15지역본부
- 국내 602개점,

제휴조직

- 전국 우체국 3,655개,
- 7eleven 2000여 개

합계 총 6,257여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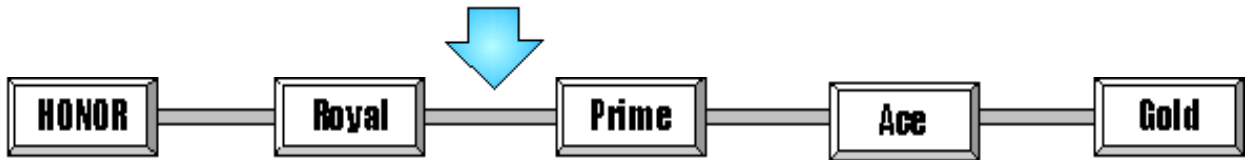


2. IBK기업은행만의 서비스

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VIP 서비스 제공

■ VIP 서비스 등급

- 당행 VIP PRIME 등급과 VIP ROYAL 등급의 중간 수준



■ 서비스 내용

- 당행 퇴직연금을 가입한 모든 근로자

[우대 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우대서비스 내용
수수료 면제	- 당·타행환 송금수수료 - 전자금융 : 텔레,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 (당·타행이체) - 당행 자동화기기 : 영업시간외 예금 인출 및 타행이체수수료 - 수신관련 제증명 및 통장재발급 수수료
환율 우대	- 창구를 통한 외화(T/C포함) 환전 및 해외 당·타발 송금시 기본 30% 우대(영업점장 우대 80%까지 가능)
대출금리 우대	- 신용대출 0.8~0.4%P - 담보대출 0.6~0.2%P 우대
교양강좌	- IBK사이버 문화센터 교양강좌 무료수강 (http://happy.ibk.co.kr) (어학, 컴퓨터, 재테크, 생활체육, 요리교실 등)

- 당행 본 우대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며, 퇴직 및 계약이전·해지 이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나. 퇴직연금 고객 토탈 서비스 제공

■ 토탈 서비스 대상

-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영업점 추천 기업 우선 지원

■ 서비스 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지원 : 제도 도입 이후 제도변경, 수수료, 재정검증, 가입확인, 계약·급여이전, 가입자교육 등 사후관리 전반 지원
- 자산운용 컨설팅 : 자산배분 및 투자전략, 위험자산 한도관리
- 국제회계기준 도입 안내 : 국제회계기준 도입 컨설팅, 퇴직급여채무 산출 서비스

다. 퇴직연금 전용 웹 서비스

- <http://www.pension.ibk.co.kr>

The screenshot shows the IBK Retirement Pension website. The header includes a logo and navigation links. The main banner features a family photo and the text '퇴직연금제도안내'.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공지사항' (Notice), '퇴직연금의 종류' (Types of Retirement Pension), and '라이프플랜' (Life Plan). The '라이프플랜' section includes options for '노후자금설계' (Old funds plan), '교육자금설계' (Education funds plan), and '결혼자금설계' (Marriage funds plan).



3. IBK 기업은행 금융상품

가. 예금



IBK급여 통장

- 입출식 예금에도 정기예금 금리 수준까지 금리우대
- 모든 은행 자동화 기기까지 수수료 면제



IBK 핸드폰 결제통장

(2010.05.18 기준)

- 핸드폰 요금만 자동이체하면 100만원 이하 연 3.2% 적용
- 모든 은행 자동화 기기까지 수수료 면제



서민섬김 통장

(2010.05.18 기준)

- 소액 예금에도 최고 연 5.0%의 높은 금리 제공
- 당행 최초 거래 고객에게 0.3% 우대
- 타 상품 가입 시 최대 0.3%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2010.05.18 기준)

- 미성년자나 무주택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 없이 가입 가능
-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
- 미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시 4.5% 고금리 제공

나. 카드



IBK Style 카드

- 딱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할인
- | | | | | |
|----------|----|----|----|-----|
| 주유
교통 | 마트 | 교육 | 병원 | 쇼핑 |
| 미용 | 외식 | 레저 | 통신 | APT |

 10개 그룹 중 2가지
선택 7% 할인
- 선택하지 않은 그룹 8가지 포함한 국내 어디서나
0.2~0.5% 할인



IBK hi 카드

- 교통비가 최대 하루 900원 할인
- 지하철, 버스 탈 때마다 최대 300원 할인
- 택시, 철도, 고속버스 5% 할인



IBK MY APT 카드

-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연결 시 매달 10%씩 최대
1만원까지 할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고객(아파트 관리비 미납부)
월 5,000원 캐쉬백

[<http://pension.ibk.co.kr>]
[☎ 1566-2566 (코드:532)]

기업은행 퇴직연금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운용현황 확인 및
동영상 강의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가입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IBK 당신도 IBK